

의안번호	제 390 호
의 결 년 월 일	200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출년월일	2001년 2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0
----------	-----

제안년월일 : 2001. 2.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위원회의 전문가활용과 관련하여 명칭의 변경으로 위상을 제고시키고 안전심사 이외에 위원회의 의정활동 자문·지원의 역할을 추가하여 직무내용을 확대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문가의 명칭 변경(제1, 2, 3, 4항)
 - “심사보조자” 를 “자문위원” 으로 변경
- 전문가 활용내용 확대(제1항)
 - 중요·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 이외에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를 추가
- 현실 불부합 조문내용 삭제(제3항)
 -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
-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추가(제4항)
 - 수당의 지급액 이외에 “직무내용”을 추가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중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를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중 “심사보조자로”를 “자문위원으로”로 한다

제12조의2 제3항중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제4항중 “심사보조자에 대한”을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12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 - - - - - - - - - 위원회의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 - - - - - 자문위원으로 - - - - - - - - - - - - - - -</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 - - -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한다.</p>
<p>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 -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 - - - - - -</p>